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6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년 3월 16일 (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대림산업(주) 빌딩 지하1층 강당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주한미국대사관 뒤)  
※ 문의) 대표전화 : 02)2011-7114, 홈페이지 주소: <http://www.daelim.co.kr>

3. 회의 목적사항

《보고 사항》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65기(2011.01.01 ~ 2011.12.3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1 참조)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부터 제3-7호 의안 까지 : 이사 선임의 건 (이상 별첨 #2 참조)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부터 제4-3호 의안 까지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별첨 #3 참조)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사항

- 제65기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보통주 100원(2%), 우선주 150원(3%)을 예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확정시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2년 3월 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대림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윤 (직인생략)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

주주님의 뜻에 만족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성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 산정(아래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88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Fax : (02)3774-3244 또는 (02)3774-3255  
<송부시한> 2012년 3월 9일(금) (※주주총회 5영업일 전)

### 의사표시 통지서

####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2년 3월 16일 개최하는 대림산업(주)의 제65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 사 표 시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주민등록번호				
의결권 주식수				

2012년 3월 일

실 질 주 주      성 명 :  
                        주 소 :

(인)

<별첨 1>

정관 변경(안)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2조(목적) 1. ~ 65. (이상 생략) 6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태양, 풍력, 지열, 바이오 매스), 운영 및 판매사업 67. ~ 72. (이상 생략)	제2조(목적) 1. ~ 65. (좌동) 66. 신·재생에너지사업 67. ~ 72. (좌동)	-Value Chain(사업영역) 확대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원료사업 등)
제10조(신주인수권) ① ~ ② (이상 생략) ③ ~ ④ (이상 생략)	제10조(신주인수권) ①~② (좌동)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u>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 하여야 한다.</u> ④~⑤ (조 ③~④와 동일)	- 개정상법 제418조제4항에 의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는 조항을 신 설함
제37조(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회사 및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가 속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이나 특정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 또는 전체주주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7조(이사의 충실의무) 제399조에 따른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서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존 제37조(이사의 충실의무)를 삭제하고, 개정상법 제40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규정을 신설함 - 다만,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경감대상 등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li> <li>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li> <li>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li> </ul>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li> <li>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li> <li>③ (좌동)</li> </ul>	- 개정상법 제391조 및 제398조에 의거하여, 회사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이사회 결의요건을 강화하고, - 이사회 결의방법을 다양화함
제45조(감사위원회의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li> <li>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li> <li>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li> <li>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li> <li>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li> <li>⑥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수 없다.</li> </ul>	제45조(감사위원회의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좌동)</li> <li>② <u>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u></li> <li>③ <u>(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u></li> <li>④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자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li> <li>⑤ (좌 ②~⑥과 같음)</li> <li>⑥ <u>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u></li> </ul>	- 개정상법 제412조의4에 의거하여, 감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의 이사회 소집청구권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비고
<p>제48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차대조표</li> <li>2. 손익계산서</li> <li>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li> <li>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li> <li>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li> </ol>	<p>제48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등)          ① (좌동)          1.~2. (좌동)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좌②와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li> <li>2.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li> <li>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li> <li>⑥ (좌③과 같음)</li> </ol> <p>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 개정상법 제449조의2에 의거하여, 승인대상 재무제표에 연결재무제표를 추가하고, 재무제표의 승인을 일정한 조건하에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음에 따라 관련 내용을 추가함</p>
<p>제50조의2(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0조의2(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p>	<p>- 개정상법 제341조 및 제343조에 의거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배당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주식의 소각 (이익소각)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51조(이익배당)</p> <p>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p> <p>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제51조(이익배당)</p> <p>① 이익의 배당은 <u>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u> 할 수 있다.</p> <p><u>②(주) ③(과 같은)</u></p>	<p>-개정상법 제462조의4에 의거하여, 이익배당의 방법으로 현물배당제도를 추가함</p> <p>-종류주식과 혼돈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함</p>
<p>부칙</p> <p>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p> <p>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3항, 제37조, 제39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45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45조 제9항, 제48조 제1항 제3호, 제48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48조 제7항, 제51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개정상법 시행일(2012년 4월 15일)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일을 따로 정함</p>

<별첨 2>

대림산업(주) 이사 후보에 관한 사항

의안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 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제3-1호	오규석 (사내이사)	1963.0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주)씨앤엠 사장</li> <li>- 대림산업(주) 경영지원본부장, 사장</li> </ul>	없음	계열회사 (대림산업(주)) 임원
		이사회			
제3-2호	박찬조 (사내이사)	1953.0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폴리미래(주) 사장</li> <li>- 대림산업(주) 석유화학사업부 사장</li> <li>- (주)대림코퍼레이션 사장</li> </ul>	없음	계열회사 (대림산업(주)) 임원
		이사회			
제3-3호	신정식 (사외이사)	1952.0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li> <li>-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li> </ul>	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제3-4호	오수근 (사외이사)	1956.0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국제상거래위원회 본회의의장</li> <li>-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li> </ul>	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제3-5호	신영준 (사외이사)	1961.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법인 KCL 미국 변호사</li> </ul>	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제3-6호	조진형 (사외이사)	1954.04.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우리은행 부행장</li> </ul>	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제3-7호	임성균 (사외이사)	1953.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장</li> <li>- 세무법인 다솔 부회장</li> <li>- 우리투자증권(주) 사외이사</li> </ul>	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별첨 3>

대림산업(주)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에 관한 사항

의안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 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제4-1호	신정식 (사외이사)	1952.0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li> <li>-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li> </ul>	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제4-2호	오수근 (사외이사)	1956.0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국제상거래위원회 본회의의장</li> <li>-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li> </ul>	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제4-3호	조진형 (사외이사)	1954.04.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우리은행 부행장</li> </ul>	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